

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34회 제2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19. 12. 9.(월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	권영숙 의원 외 6명



행정건설위원회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제출자 : 권영숙 의원 외 6명
- 제안일 : 2019. 11. 22
- 회부일 : 2019. 11. 25. (의안번호 : 19 -174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(안 제2조)
-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(안 제3조)

4. 관계법령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제4조 및 제7조

5. 검토보고

- 본 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주요내용으로는
 - (안 제1조) 목적에 대한 내용임.
 - (안 제2조)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임
 - (안 제3조)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사항임.
- 검토의견으로는
 -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아 우리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주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
-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
- 더불어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체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, 공무원들이 책임부담과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됨.